

# 의안 검토 보고

의안 번호	제 207 호		
건명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일본정부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출)자	정길자 의원외 13인	제안(출)년월일	2001. 7.1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이종환		

## 1. 검토내용

### 가. 제안이유

일본정부가 다음 세대를 주관할 청소년들에게 과거사의 올바른 이해를 통한 정확한 역사관 확립을 구축해 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국가간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며 또한, 한일양국간의 역사적 대립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에서 과거 제국주의의 침략행위의 은폐·축소·왜곡 행위에 대하여 분노하며, 강력하게 이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반대운동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전개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관내 시민단체와 연계 일본상품 불매운동 전개
- 일본대사관등 관련기관 항의 방문
- 스기나미구의회에 우리구 입장 전달
- 성명서 발표

## 2. 검토결과

- 일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교과서는 일제침략이 조선근대화와 동남아해방에 기여했다는 뉘앙스나, 가해사실을 가능한 한 축소 은폐하려는 자세도 바뀌지 않았으며, 또한 태평양전쟁은 여전히 '대동아 전쟁'이고 일본은 전쟁의 '피해자'라는 과거미화 사관은 변함없이 왜곡·축소표현되었고, 군대위안부 관련사항은 고의로 누락시켰음.
- 7월 9일 일본정부가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우리정부의 수정요구를 사실상 전면 거부한 검토결과를 공식 통보 해음에 따라 우리 정부에서는 긴급 '역사교과서 왜곡 대책반' 회의를 열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키로 하였음.
- 일본 도치기 현 시모쓰가 교과서채택 지구결정에 대해 산하 10개 기초단체중 오히라마치와 미부마치, 노기료마치, 오야마시는 7월 17일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교과서채택 결정을 거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앞서 후지오카와 고구분지는 16일 거부결정을 내렸다고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음.

### □ 검토의견

일본정부로 하여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내용중 과거사에 대한 은폐·축소·왜곡된 부분을 즉각 시정하도록 40만 서초구민과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역사교과서 채택 저지 활동을 전개하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향후 활동 방향이나 시민단체와 연계방안은 추후 충분히 연구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됨.

###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 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위원회의 설치)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특별위원회)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의) 사무범위) ①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29, 99·2·8]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등에 관한 사무

가. 관할구역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 농림·상공업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소유지·보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립·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의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가. 지역개발사업
  -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 사. 자연보호활동
    - 아.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 파.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지도
    -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 나. 화재예방 및 소방

제11조 (국가사무의 처리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1. 외교, 국방, 사법, 국세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2.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3. 농림·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4. 국가종합경제개발계획, 국가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장항만, 고속국도·일반국도, 국립공원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5. 근로기준, 측량단위등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요하는 사무
6. 우편, 철도등 전국적 규모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
7.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등 지방자치 단체의 기술 및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 제6절 위원회

제50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  
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2·31]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개정 91·12·31]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 제 2 조 (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9 조 (특별위원회) ①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한 인건심사 및 조사등을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  
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95.08.30)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  
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  
여야 한다.  
⑥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